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투자촉진위원장 안내사항

제 5/2562 호

훈련 지원 대책

2014 년 12 월 3 일에 고시된 제 2/2557 호 투자위원회 종합 안내사항 투자촉진 정책과
규정과 2017 년 3 월 14 일에 고시된 제 2/2560 호 투자위원회 안내사항 Merit-Based
Incentives 관련 권리와 혜택 변경에 관련하여

투자 촉진법 불교년 2520 년 16 조, 18 조 및 31 조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 안내사항
제 2/2557 호 9.2.1 항에 있는 기업가들이 Merit-based Incentives 에 따른 프로젝트의 노동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는 추가 권리 및 혜택을
개선하라는 안내를 이와 같이 함

1. 인건 자원 개발과 관련된 투자 또는 경비 관련 아래와 같이 투자를하거나 비용이
드는경우 투자 조건 또는 투자에 관련하여 최소 투자 비용이 정해지지않은 상태에서
법인세 면제를 받음

1.1 기술과 혁신관련 훈련이나 교육

- (1) 기술과 혁신관련 훈련이나 교육을 기술교육을 받고있는 대학생에게
훈련이나 교육을 Work-integrated Learning(WiL)의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교육을 제공하거나 투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
- (2) 투자금의 100%에 해당되는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토지와 순환자본
제외)을 제공하거나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의 훈련 비용
제공

1.2 고급 기술 훈련(Advanced Technology Training)

- (1) 투자위원회에서 승인한 고급 기술 훈련은 고급 기술 훈련 또는 고도 기술
훈련은 과학기술교육부(고등교육,과학,리서치,혁신)의 인증을 받은경우
또는 동부 경제회랑(투자촉진구역)에 해당되는 동부 경제회랑(EEC)

교육기관으로 회사내부 또는 외부로 훈련을 제공하며 외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해당되지만 꼭 국내여야하며 해당 산업과 같은 분야여야함

(2) 투자금의 200%에 해당되는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토지와 순환자본 제외)을 받거나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의 훈련 비용 제공

2. 2021 년 12 월 30 일까지 투자촉진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2019 년 9 월 20 일 이후 적용

2019 년 10 월 28 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